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공공분양주택(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13번지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94세대 (전용면적 59㎡A 314세대, 59㎡B 57세대, 74㎡A 48세대, 84㎡A 7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고양창릉 S-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주관 업체 안내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미건설(주) / 계룡건설산업(주) / (주)태영건설 / 이에스아이(주)

☐ 시공업체 : 우미건설(주) / 계룡건설산업(주) / (주)태영건설 / 이에스아이(주)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031-632-5488)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사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많은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알 려 드 린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4.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3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2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중요] 견본주택 관람 안내
- [중요] 견본주택 개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 2026.05.14.(목) ~ 05.15.(금) 10:00~17:00 (사전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관람 가능, 일반 관람자 관람불가)
- ② 일반 관람자 대상 : 2026.05.16.(토) ~ 05.22.(금) 10:00~17:00 (사전청약 당첨자도 방문관람 가능)
-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을 '26.05.14.(목)~05.15.(금) (10:00~17:00) 2일간 사전공개합니다.
- 견본주택 내 견본세대는 59A, 84A가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9B, 74A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홈페이지 및 팸플릿 참고)
-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
- * 견본주택 관람 일정
- | 대 상 | 구 분 | 방문 일정 | 주 소 | 기 타 |
|-----------------------|-------------------------------|--|-----------------------------|--|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 '26.05.14.(목) ~ 05.15.(금)
(10:00~17: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 |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031-632-5488 (10:00~18:00) |
|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 일반관람 | '26.05.16.(토) ~ 05.22.(금)
(10:00~17:00) | | |
-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주택형(주택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상기 '견본주택 관람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 등의 경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전시된 단위세대(견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식 오픈 : 2026.05.14.(목) 10:00 예정)
- ※ 홈페이지 정식 오픈일에 주택형(주택타입)별 평면도, e-모델하우스 등 상품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본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우미건설의 '린'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 등은 불가)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내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표1>)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단,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 기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5.04.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04.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협의양도인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59㎡A/B 해당)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59㎡A/B 해당)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검증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세대주 변경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3~14페이지 표.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해당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특례를 사용하여야만 해당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는 특례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특례 사용 처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 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이 각각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부정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이 불가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 포함)의 소명서류 제출 불가(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소득·자산 조회불가, 연락부재 등으로 인한 소명서류 제출불가, 소득소명 시 기한 후 소득신고서류 등 모든 사유 불인정), 적격여부 심사 시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불가 등 모두 불인정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원(배우자 제외)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사전청약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주택형(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 (주택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 포기					
04.30.(목)	05.18.(월) 10:00부터 05.19.(화) 17:00까지 [05.18. 야간접수 가능]	05.20.(수) (14:00)	05.21.(목) 10:00부터 05.22.(금) 17:00까지 [05.21. 야간접수 가능]	05.26.(화) (10:00~17:00)	05.27.(수) 10:00부터 05.28.(목) 17:00까지 [05.27. 야간접수 가능]	06.11.(목) (10:00)	06.17.(수) ~ 06.21.(일) (10:00~17:00)	07.27.(월) ~ 07.30.(목)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RS(1661-7700)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견본주택(방문 접수)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제(구비서류 지참 방문)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안내 예정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견본주택 1층(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선호 주택형(주택타입)이 아닐 경우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포기(인증서 필요)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본청약 신청접수 및 청약통장 사용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계약 체결기간에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견본주택 1층(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협의양도인은 경쟁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예정자를 선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부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입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4.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 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 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 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화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미동의 시 청약 신청 및 자격검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안내한 서류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자격검증 불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고양창릉 S-1BL)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공공분양주택 총 494세대 [사전청약당첨자 362세대, 이주자 4세대, 일반공급 32세대, 특별공급 96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 25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 12세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 5세대) 포함]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확장 여부	면적 (㎡)		계	사전 청약 당첨자	이 주 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협의 양도인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S-1	합 계										494	362	4	5	12	12	18	6	25	6	12	32	29	15	'29.05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059.9800A	59A	59.98	21.5192	8.1006	37.4777	127.0775	확장	30.10	41.3150	314	229	-	3	8	8	13	4	16	4	8	21	29	11		
	059.9800B	59B	59.98	21.5192	8.1006	37.4777	127.0775	확장	31.63	41.3150	57	41	-	1	-	2	2	-	4	1	2	4	29	1		
	074.9200A	74A	74.92	26.8793	10.1183	46.8128	158.7304	확장	34.14	51.6058	48	44	-	-	2	-	-	-	1	-	-	1	28	2		
	084.9900A	84A	84.99	30.4922	11.4784	53.1049	180.0655	확장	35.32	58.5422	75	48	4	1	2	2	3	2	4	1	2	6	29	1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주택형(주택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https://gc.lynn.co.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표에 표기된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발코니 면적입니다.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주택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주택타입)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주택타입)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주택타입)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우미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주)태영건설, 이에스아이(주) / 시공업체 : 우미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주)태영건설, 이에스아이(주)]입니다.

3. 공급금액(balconi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일정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m², 세대]

주택형 (주택타입)		동(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용자금 제외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27.01.11.	‘27.05.10.	‘27.09.10.	‘28.02.10.	‘28.07.10.	‘28.12.11.	입주 시	
059.9800A	59A	101동 (1,3,4,5호) 102동 (2,3,4,5호) 103동(1,2,3호) 104동(3,5호)	1층	11	533,710	53,4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105,510	55,000
			2층	13	539,390	54,000	53,900	53,900	53,900	53,900	53,900	53,900	106,990	55,000
			3층	13	550,740	55,1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110,640	55,000
			4층	13	562,100	56,300	56,200	56,200	56,200	56,200	56,200	56,200	113,600	55,000
			5층 이상	264	567,780	56,800	56,700	56,700	56,700	56,700	56,700	56,700	115,780	55,000
059.9800B	59B	101동(2호) 104동(4호)	1층	1	533,710	53,4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105,510	55,000
			2층	2	539,390	54,000	53,900	53,900	53,900	53,900	53,900	53,900	106,990	55,000
			3층	2	550,740	55,1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110,640	55,000
			4층	2	562,100	56,300	56,200	56,200	56,200	56,200	56,200	56,200	113,600	55,000
			5층 이상	50	567,780	56,800	56,700	56,700	56,700	56,700	56,700	56,700	115,780	55,000
074.9200A	74A	103동(5호) 104동(2호)	1층	2	649,130	65,000	64,900	64,900	64,900	64,900	64,900	64,900	119,730	75,000
			2층	2	656,040	65,700	65,600	65,600	65,600	65,600	65,600	65,600	121,740	75,000
			3층	2	669,850	67,000	66,900	66,900	66,900	66,900	66,900	66,900	126,450	75,000
			4층	2	683,660	68,400	68,300	68,300	68,300	68,300	68,300	68,300	130,460	75,000
			5층 이상	40	690,570	69,100	69,000	69,000	69,000	69,000	69,000	69,000	132,470	75,000
084.9900A	84A	102동(1호) 103동(4호) 104동(1호)	1층	1	736,390	73,700	73,600	73,600	73,600	73,600	73,600	73,600	146,090	75,000
			2층	3	744,230	74,500	74,400	74,400	74,400	74,400	74,400	74,400	148,330	75,000
			3층	3	759,890	76,0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153,490	75,000
			4층	3	775,560	77,600	77,500	77,500	77,500	77,500	77,500	77,500	157,960	75,000
			5층 이상	65	783,400	78,400	78,300	78,300	78,300	78,300	78,300	78,300	160,200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주택형(주택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주택형(주택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balconi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שה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자금 안내>**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중도금			
	잔금			

- ※ 분양대금 납부계약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 안내 및 확인방법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가상계좌 예금주의 경우 관리계좌(모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 시 예금주는 세대별 동·호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계약은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약(가상계좌)는 balconi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약(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홍길동 → ‘1011502홍길동’ / 101동 702호 계약자 홍길동 → ‘10107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약(가상계좌)는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까지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기간 내 함께 진행하며, 공동주택 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주택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	계약 시	2027.01.11.	입주지정기간
59A	6,800	680	680	5,440
59B	5,650	565	565	4,520
74A	7,730	773	773	6,184
84A	6,980	698	698	5,584

-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 확장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주택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시 안방 발코니 측 전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구 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중도금	공급금액의 10%	'27.01.11.			
잔 금	공급금액의 80%	입주 시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 안내 및 확인방법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가상계좌 예금주의 경우 관리계좌(모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 시 예금주는 세대별 동·호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까지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7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동주택 공급계약기간 내 함께 진행)
- ※ 본 아파트는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주택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주택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상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로 엇갈려 시공되므로 계약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가 견본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타 사항은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벽지 · 바닥재 · 주방용구 ·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 (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실외기실 PL창호, 실외기실 루버창 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 (시멘트몰탈 포함)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하향식피난실 문틀 및 문, 욕실문틀 하부 실,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② 바닥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석고보드(단열공사), 단열재, 경량콘크리트 판넬(세대칸막이벽),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냉매배관(안방+거실), 전기(통신)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④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등박스 몰딩, 우물천장 몰딩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기계환기설비, 우물천장, 설비배관 및 기구,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약세사리류, 천정재 (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건식벽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 후드), 벽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전기(통신)설비 배관 및 배선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통신)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⑧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등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발코니 난간, 발코니 바닥 방수, 설비배관(우오수 포함),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가스배관

※ 상기 품목은 주택형(주택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공제 금액 [단위 : 원]

주택형(주택타입)	59A	59B	74A	84A
금액	29,780,000	29,780,000	34,449,000	39,08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공동주택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납부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주택타입)	59A	59B	74A	84A
금액	5,780,000	4,802,000	6,570,000	5,933,000

■ 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준공 후 키볼출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 시점부터 세대 관리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정전, 누전, 누수, 우수범람 등 피해 발생 시 해당세대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상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과 골조 이외 항목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양도가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주택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는 거실 등기구는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연동 문제 및 제품 사양에 따라 조명밝기 조절(디밍) 기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디지털도어록은 직접 선택·시공 시 세대단말기(월패드)와의 통신프로토콜 연동 문제 등으로 세대단말기를 통한 문열림 기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가스배관의 마감은 주방가구 등 미시공에 따라 가스 차단밸브 고정이 불가하여 이중후렉스불배관 연결 없이 계량기 후단 마감캡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대출은행을 알선한 경우)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사유로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안내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설치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체결기간(추후 별도 안내) 내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유상옵션 외 무상옵션 선택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 세대(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 제외) 해당 계약기간 내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해당 무상품목을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건본주택 또는 홈페이지(<https://gc.lynn.co.kr/>)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결정기간 이후 선택품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안정기(SMPS), 감지기, 배선기구, 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주택타입)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 당 단지는 Bespoke 특화사업 시범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입주예약자 가구 선택품목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가구가 (주)한샘 가구로 시공되어 일부 가구에 상표가 부착됩니다.
- ※ Bespoke 특화사업 적용에 따라 일부 가구 선택 시 다른 가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부 유상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마감재로 제공되는 벽지의 종류, 색상, 패턴 등이 변경(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되므로 해당 내용은 마감재리스트 및 건본주택을 내방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센서등 또는 별도 등기구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건본주택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팸플릿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 현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84A	비고
현관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800	1,800	1,800	1,800	-
	신발장	브론즈경 도어	무상				현관 A
		PET마감 도어	무상				현관 B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 + 오픈장	500	-	1,100	1,200	현관 A
		시스템가구 + 수납강화장					현관 B
	신발장2	오픈장	-	1,500	-	-	현관 A
		수납강화장					현관 B

- ※ 향후 준공 이후 계약자가 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현관에 소방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벽체, 가구, 디딤판의 형태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팬트리 미선택 시 벽체와 가구도어가 시공되며, 시스템가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신발장 ‘브론즈경 도어(현관 A)’ 선택 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오픈장(현관 A)’ 또는 신발장2 ‘오픈장(현관 A)’이 선택 가능합니다.
- ※ 신발장 ‘PET마감 도어(현관 B)’ 선택 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현관팬트리 ‘시스템가구+수납강화장(현관 B)’ 또는 신발장2 ‘수납강화장(현관 B)’이 선택 가능합니다.
- ※ 신발장 선택에 따라 내부 우산꽂이 색상이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거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84A	비고
거실	타일(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광폭강마루(안방, 침실)		1,300	1,300	1,400	1,800	
	광폭강마루(바닥 전체)		500	500	600	700	
	대형아트월	대형아트월(600x1200)	1,100	-	1,200	1,300	
		대형아트월(600x1200) + 복도(1면)	-	1,800	-	-	
	고급거실특화	거실 : 시트알판(1면) +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 복도 : 시트알판(1면) +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 주방 : 시트알판(1면)	1,500	-	1,600	-	
		거실 : 시트알판(1면) +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 복도 : 시트알판(1면) +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	-	1,300	-	1,700	
	고급조명특화	현과 : 상부 간접조명 라인등박스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거실 : 우물천장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주방 : 원형 직부등(3EA) + 우물천장(루버, 2면간접조명) 안방, 침실 : 사각 직부등(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3,700	-	3,900	4,200	
		현과 : 상부 간접조명 라인등박스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거실 : 우물천장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주방 : 원형 직부등(3EA) + 우물천장(루버) 안방, 침실 : 사각 직부등(디밍기능, 색온도 조절)	-	3,500	-	-	

* 타일 + 광폭강마루 선택 시 74A는 복도팬트리, 84A는 주방팬트리를 포함하여 타일이 시공됩니다.

※ 대형 아트월은 납품자재 및 시공여건 등에 따라 타일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 광폭강마루 또는 광폭강마루 미선택 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대형 아트월 미선택 시 기본형 아트월(400x800)로 시공됩니다.

※ 고급거실특화 미선택 시 시트알판 부위가 벽지로 시공되며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이 미시공됩니다.

※ 고급조명특화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조명의 종류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무상옵션) : 주방 및 가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84A	비고
주방	주방상부장	일반형 상부장	무상				주방 A
		하부 오픈형 상부장					주방 B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인조대리석(MMA)상판)	-	1,100	-	1,300	
	고급주방 특화1	1. 세라믹(상판+벽부+아일랜드장 상판) + 사각 멀티콘센트 2. 상부장 하부간접 조명 3. 대형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	3,100	-	3,500	59B, 84A 아일랜드장 선택 시 선택 가능
		1. 세라믹(상판+벽부) + 사각 멀티콘센트 2. 상부장 하부간접 조명 3. 대형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2,900	-	3,200	-	
	고급주방 특화2	1. 세라믹(상판+벽부+아일랜드장 상판) + 사각 멀티콘센트 2. 상부장 하부간접 조명 3. 하부장 마감 변경(아일랜드장 하부 포함) 4. 대형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	3,600	-	4,000	
		1. 세라믹(상판+벽부) + 사각 멀티콘센트 2. 상부장 하부간접 조명 3. 하부장 마감 변경 4. 대형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3,400	-	3,700	-	
	팬트리	주방팬트리	-	-	-	1,800	
		복도팬트리	-	-	1,100	-	
	냉장고장	통합형 냉장고장 + *측면 수납장	1,300	1,300	1,300	1,900	주방 A
		수납형 냉장고장 + *측면 수납장					주방 B
	주방장식장1	글라스 상부장(상하부 간접조명) + 하부 수납장 + 인조대리석(상판,벽부)	-	-	-	3,200	주방 A
		수납강화형 장식장 + 선반 하부조명					주방 B
	주방장식장2	글라스 상부장(상하부 간접조명) + 하부 수납장 + 세라믹(상판,벽부)	-	-	-	3,600	주방 A
가전	광파오븐	삼성전자	600	600	600	600	
		LG전자	900	900	900	900	
	인덕션	삼성전자	900	900	900	900	
		LG전자	1,100	1,100	1,100	1,1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1,900	1,900	1,900	1,900	
		LG전자	1,500	1,500	1,500	1,500	

* 냉장고장 측면수납장은 84A에서만 시공됩니다. 그 외 주택형(주택타입)에서 미시공됩니다.

※ 59B 및 84A의 경우 아일랜드장 선택 시 고급주방특화(1 또는 2)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상부장 '일반형 상부장(주방 A)' 선택 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냉장고장 '통합형 냉장고장(주방 A)'이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상부장 '일반형 상부장(주방 A)' 선택 시 84A는 주방장식장1 '글라스 상부장(상,하부 간접조명)+하부 수납장+인조대리석(상판,벽부)(주방 A)' 또는 주방장식장2 '글라스 상부장(상,하부 간접조명)+하부 수납장+세라믹(상판,벽부)(주방 A)' 중 택 1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상부장 '하부 오픈형 상부장(주방 B)' 선택 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냉장고장 '수납형 냉장고장(주방 B)'이 선택 가능합니다.(84A의 경우 '수납형 냉장고장+측면 수납장(주방B)')

※ 주방상부장 '하부 오픈형 상부장(주방 B)' 선택 시 84A는 주방장식장1 '수납강화형 장식장 + 선반 하부조명(주방 B)'이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장식장 및 고급주방특화 선택 시 하부 수납장 및 수납강화장 마감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수납형 냉장고장'의 수납장 사이즈는 주택형(주택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급주방특화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부는 타일로 시공되며,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으로 설치되며, 광파오븐 및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수납장으로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의 전면패널은 가구마감과 유사하게 시공되나, LG전자 식기세척기의 경우, 패널 상단의 문열림 손잡이 부분은 가구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 시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선택(주방 A / 주방 B)에 따라 벽부 악세서리, 프라이팬 수납장, 인출망장, 수저분리함이 상이합니다.

※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주방 악세서리 구성이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 안방/침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84A	비고
안방/침실	안방드레스룸	입식 파우더장 + 유리도어(브론즈 프로스트) + 세미형 시스템선반	3,200	3,200	4,000	3,700	침실 A
		좌식 파우더장 + 유리도어(패턴 유리) + 세미형 시스템선반					침실 B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 도어(에칭) + 수납가구 1	3,600	3,600	-	-	침실 A
		슬라이딩 도어(패턴) + 수납가구 2					침실 B
	침실 불박이장	불박이장(세미파우더형) ※ 1개소 기준	1,400	1,400	1,500	1,600	침실 A
		불박이장(수납강화형) ※ 1개소 기준					침실 B

- ※ 안방드레스룸 ‘입식 파우더장+유리도어(브론즈 프로스트)+세미형 시스템선반(침실 A)’ 선택 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 도어(에칭) + 수납가구 1(침실 A)’이 선택 가능합니다.
- ※ 안방드레스룸 ‘입식 파우더장+유리도어(브론즈 프로스트)+세미형 시스템선반(침실 A)’ 선택 시 침실 불박이장 ‘불박이장(세미파우더형)(침실 A)’이 선택 가능합니다.
- ※ 안방드레스룸 ‘좌식 파우더장+유리도어(패턴 유리)+세미형 시스템선반(침실 B)’ 선택 시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 도어(패턴) + 수납가구2(침실 B)’가 선택 가능합니다.
- ※ 안방드레스룸 ‘좌식 파우더장+유리도어(패턴 유리)+세미형 시스템선반(침실 B)’ 선택 시 침실 불박이장 ‘불박이장(수납강화형)(침실 B)’이 선택가능합니다.
- ※ 침실 불박이장 선택 시 59A-59B는 문짝이 3개로, 74A-84A는 문짝이 4개로 시공됩니다.
- ※ 드레스룸 미선택 시 가구도어가 설치되지 않고, 벽체만 시공됩니다.
- ※ (안방/침실) 불박이장 미선택 시 벽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 욕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84A	비고
욕실	공용욕실 고급특화	대형타일 벽(600*1200)/바닥(300각) + 비데일체형 양변기 + 복합환풍기 + 욕실장 하부간접 조명 + 고급형 약세사리 + 고급형 수전	2,400	2,400	2,400	2,400	
	부부욕실 고급특화	대형타일 벽(600*1200)/바닥(300각) + 비데일체형 양변기 + 복합환풍기 + 욕실장 하부간접 조명 + 고급형 약세사리 + 고급형 수전	2,700	2,700	2,700	2,700	

- ※ 공용욕실 고급특화 미선택 시 벽 및 바닥은 일반타일, 양변기는 원피스 양변기 및 커버형 비데, 환풍기는 일반환풍기 및 약세사리 및 수전은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 부부욕실 고급특화 미선택 시 벽 및 바닥은 일반타일, 양변기는 원피스 양변기 및 커버형 비데, 환풍기는 일반환풍기 및 약세사리 및 수전은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대수	59A	59B	74A	84A	비고
시스템에어컨	거실 + 안방	2개소	4,500	4,500	4,800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4개소	7,500	7,500	7,800	-	
	거실 + 주방 + 안방	3개소	-	-	-	6,1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개소	-	-	-	9,100	

-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건립세대 해당)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안방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되며, 거실 냉매배관 및 안방 냉매배관 매립박스의 위치는 세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해당 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유상옵선 선택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감지기, 등기구, 우물천장 크기 및 깊이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나, 본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기능이 없으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분양 당시 선정된 제품으로 설치 예정이며 제품의 품질·품귀·생산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팸플릿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주택타입)이라도 선택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무선 컨트롤러 1개)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는 미설치됨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제조사, 모델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중도금	공급금액의 10%	'27.01.11.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 시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 안내 및 확인방법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가상계좌 예금주의 경우 관리계좌(모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 시 예금주는 세대별 동·호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가상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은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

-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홍길동 → '1011502홍길동' / 101동 702호 계약자 홍길동 → '10107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까지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주체 및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을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 조건(대출이자 계약자 직접 납부)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이 가산됩니다.
 -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balconi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사전청약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2022.07.15.)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사전청약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 기타지역 거주자 등으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30%	· 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4.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 거주 ('25.04.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5.10.30.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수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이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30.)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 25.04.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 거주 (' 25.04.30. 전입한 경우 포함)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06.1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협의양도인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세대주 변경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각각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 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사업주체가 인정하는 확인원에 한함)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중요)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자산 관련 소명자료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발급서류,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해당 특별공급에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직접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②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215,5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45,42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6년식 자동차를 202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중요)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60㎡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 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60㎡ 이하)·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 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60㎡ 이하),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단순 연락두절 인정 불가)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중요)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개인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소득초과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는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4.30.)까지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는 제외)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고양시 1년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다른 주택 당첨여부(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04.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5.18.(월)(10:00) ~ 05.19.(화)(17:00) [05.18.(월) 야간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의 모든 주택형(주택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주택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 2순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주택타입)	발코니 확장 여부
고양창릉	S1	59	059.9800A	발코니 확장형
			059.9800B	
		74	074.9200A	
		84	084.9900A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 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주택타입) 배정결과 확인 : 2026.05.20.(수)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본청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05.21.(목) 10:00 ~ 05.22.(금)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포기 선택)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반공급 신청』, 『특별공급 신청』 아님)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취소 기간 내 청약신청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5.18.(월)~19.(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5.18.(월)~19.(화)]에 미신청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Ⅱ. 신청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2026.06.11.(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청약신청 기간 내 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발표 후 청약 취소기간 내 청약신청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며,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신청 취소 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 청약신청 무효 주장 또는 신청포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로 관리됩니다.
- 사전청약 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1. 고양창릉 이주자주택 대상자

■ 신청자격

- **이주자주택 대상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고양창릉 S-1BL)’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5.26.(화) 10:00 ~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주택타입)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이주자주택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5.26.(화) 10:00 ~ 17:00)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이주자주택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에(당해 이주자주택 대지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전 확정받은 주택형(주택타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주택형(주택타입)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 아파트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협의양도인 · 철거주택 소유자(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협의양도인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협의양도인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고양창릉 S-1BL)’ 공공분양주택의 철거주택 소유자(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5.26.(화) 10:00 ~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협의양도인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으로 신청. 철거주택 소유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동일 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상속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주택형(주택타입)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이후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주택타입) 내에서 **동별·층별·방향·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특별공급 주택형(주택타입)별 전체 공급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IV. 신청 시 확인사항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양도인] 협의양도인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주택 소유자]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관련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국가유공자(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철거민(고양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조직 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5.26.(화)(10:00~17:00))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협의양도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5.01. ~ 2026.04.30. 기간 중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의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의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수도권)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이라 함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 청약이 적발될 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4.30.~2026.04.30.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경우,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수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 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으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 (출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8.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및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9.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74㎡A, 84㎡A의 경우 ①을 충족하여야 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 59A, 59B만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 (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③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 59A, 59B만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59㎡A, 59㎡B 해당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74㎡A, 84㎡A 해당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을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전 주택형(주택타입) 당첨자 해당)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및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주택타입)별로 **고양시(1년 이상 계속 거주), 경기도(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와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 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제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제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제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6.1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신생아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및 출산특례 사용자의 경우 자녀양육사실 증빙서류 등),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는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 예정자), 이주자주택 대상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5.18.(월)~19.(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5.18.(월)~19.(화))에 미신청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Ⅱ. 신청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협의양도인·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본인 기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협의양도인·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본 아파트의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이주자주택 대상자·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이주자주택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gc.lynn.co.kr/>)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제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천으로 결정된 주택형(주택타입)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천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천·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또는 결번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주택타입)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주택타입)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주택타입)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주택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2026.05.18.(월) 10:00부터 2026.05.19.(화) 17:00까지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주택형(주택타입) 배정결과 발표	2026.05.20.(수) 14:00		
		본청약 신청 포기	2026.05.21.(목) 10:00부터 2026.05.22.(금) 17:00까지		
	• 이주자주택 대상자 • 협의양도인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철거주택 소유자 포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6.05.26.(화) (10:00~17:00)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천공급		2026.05.27.(수) 10:00부터 2026.05.28.(목) 17:00까지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홍보자료, 견본주택, 홈페이지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주택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의 모든 주택형(주택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주택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 → 2순위 → ...)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천하여 배정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 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는 각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주택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형(주택타입) 선호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형(주택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모든 유형(사전청약당첨자, 이주자주택 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서 청약대행접수는 불가하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청약이 어려운 분(인증서 소지 필수)의 경우 건본주택(031-632-5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협의양도인·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6.05.26.(화)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사전청약 당첨자, 이주자주택 대상자, 협의양도인·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희망 시 포기 신청 필요

• 이주자주택 대상자·특별공급(협의양도인,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협의양도인/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신생아우선공급/우선공급(1순위자)/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5.18.(10:00) ~ 2026.05.19.(17:00), (특별공급) 2026.05.26.(10:00~17:00), (일반공급) 2026.05.27.(10:00) ~ 2026.05.28.(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2026.05.21.(10:00) ~ 05.22.(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합니다.

2.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가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https://gc.lynn.co.kr/) 및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정당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정당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6.06.11.(목) 10: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6.06.17.(수) ~ 06.21.(일) 10:00~17:00	'26.07.27.(월) ~ 07.30.(목) 10:00~16:00	추후 일정 고지 당사 홈페이지(https://gc.lynn.co.kr/)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견본주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 ※ 사전방문예약제 운영 - 당사 홈페이지(https://gc.lynn.co.kr/)			

-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추첨 일정에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확인 방법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사전청약 당첨자, 이주자주택 대상자, 특별공급(협약양도인·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형(주택타입)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기간 상이)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에 방문하여 제출 (2026.06.17.(수) ~ 06.21.(일) 10:00~17:00)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사전청약자용)	본인 및 세대원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우미건설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 전체포함 ”으로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 전체포함 ”으로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원 각각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필수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개명 전·후 모두 동일기간으로 지정) 모두 제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까지 모두 포함)**’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주자주택 대상자(이주자), 특별공급(협의양도인, 철거주택소유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초초·신혼부부·신생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장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이주자 ·철거주택 소유자 ·협의양도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청약자용) ※자산·소득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우미건설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모든 당첨자 필수 제출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필수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협의양도인 및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개명 전·후 모두 동일기간으로 지정)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나, 출산한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의 경우)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서류제출기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필수 제출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예비)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유효한 번호가 아니거나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주택소유, 소득, 자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자격검증 불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래주거 처분 관련 서약서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건본주택에 비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까지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인정받고자 하는 출산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표시한 전체출력 내역) 제출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발급(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내역) - 열람이 아닌 ‘발급’요구서로 신청 후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반드시 체크 - 기간 : 3년 이상의 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2023.04.30.~2026.04.30.) - 필요항목의 경우 ‘전체항목’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까지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08.01.01. 전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로 발급 ※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자녀	•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인정받고자 하는 출산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청약자용)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에 게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 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아래 <표9> 참고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인정받고자 하는 출산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서류제출기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하여 필수 제출(‘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	출생증명서	본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예비배우자의 경우 당첨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까지 모두 포함)’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 및 소득세 납부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청약자용) ※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우미건설 컨소시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란 본 아파트 59A, 59B를 의미함. 이하 같음.)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필수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개명 전·후 모두 조회기간 동일 지정)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공고일 현재 임신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불인정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서류제출기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하여 필수 제출(‘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유효한 번호가 아니거나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주택소유, 소득, 자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자격검증 불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과거이력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세대원 각각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을 개명 전·후 모두 동일기간으로 지정) 모두 제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신청자는 적법한 자격검증절차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자격검증서류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금수납 불가)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15만원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양식 :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 (https://gc.lynn.co.kr/)에서 다운로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청약, 당첨,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자, 이주자주택 대상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 조건(대출이자 계약자 직접 납부)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 관련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또는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등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오염토,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지급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에지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그룹스터디룸(입주민회의실),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등] 등이며,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 공통사항

- 기본주택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5m(1~3층 세대 기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세대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 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됩니다.(기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기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기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기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음향설비, CCTV는 기본주택용으로 본시공 시 미설치됩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발코니 수전 및 콘센트는 상황에 따라 주택형(주택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주택형(주택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주택의 가구 주위, 문틀 주위 등 코킹은 본시공에서 동일하게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해당기관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기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지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복리시설,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기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기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기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관련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정 세면기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나,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며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6.07.27. ~ 2026.07.30.) 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서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부 (자격검증 제출서류와는 무관 추가 발급 필수)

4. 지구 및 단지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주택타입)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주택타입)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주택타입)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건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분양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체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시공과정 중 관련 법령에 의거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가마,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변환경

▶ 단지 주변도로

- 단지 북측에는 약 20.5m 도로, 서측에는 약 24m 도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대지여건에 따른 경사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위치하여 인접 동 및 해당 라인 저층 세대의 경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과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석 및 계단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 변경 등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부의 도로계획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개발주체의 상황이나 사정에 의하여 해당사업의 연기,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교육시설 관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 아남)이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시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자가 운영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내 유발되는 초등학교는 (가칭)창릉7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배치할 계획이나 (가칭)창릉7초 개교 지연 및 설립이 어려울 경우 인근 기존 초등학교에 배치될 계획이며, 중학생은 인근 기존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단,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과 신설학교 설립시기는 교육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양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진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개발사업 추진시기 및 경기도교육청의 중장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지표, 취학예정학생수 증감 추이, 주변 개발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고양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 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 교육정책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학생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유치원	유7	창릉7유	미정
초등학교	초7	창릉7초	미정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여부 및 시기,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접시설

- 단지 동측에는 녹지, 하천 및 단독주택용지, 남측에는 공원, 초등학교 및 유치원용지, 서측에는 녹지 및 공동주택용지, 북측에는 공동주택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녹지와 하천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공동주택용지, 북서측에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동측에는 단독주택용지와 주차장용지, 서측과 남서측에는 녹지 및 공동주택용지, 남측에는 초고 및 유치원 부지 아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용지, 업무시설, 상업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착공 시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동·향·층별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서측에는 단독주택, 민간분양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주변 지형 특성상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 외부 부지에 분묘가 인접해 있습니다. 일부 저층 및 중층 세대에서는 해당 시설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입주 전 현장을 확인하시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지 중심 직선거리 기준(이하 같음) 서측 약 250m, 동측 약 330m, 북서측 약 600m, 남동측 약 450m 및 약 600m 내 분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북동측 약 300m 고양휴게소와 약 450m 내 고양톨게이트가 위치하여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약 550m 내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중심 직선거리 기준 약 1km 내 고양CC(지구 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모형도 및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형, 시설물의 형태,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공원녹지 및 도로의 레벨, 형태, 시설계획 등 조성계획은 시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기관 등의 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구여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3호로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추후 하천선형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선형 변경,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송전탑, 전신주, 철탑,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비닐하우스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 계획을 확인 후 분양 및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내외 구조물(보도육교, 지상경사로 등),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복합커뮤니티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구 내에는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행복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연립주택, 민간임대, 민간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GTX-A 역사 1개소 및 고양은평선 역사 4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와 별개 사업으로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공사·운영 등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기준 지구 외 남측 약 1.1km 이내에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위치하며, 지구 외 북서측 800m 이내에 3호선 화정역, 지구 북서측 1km 이내에 3호선 원흥역이 위치합니다.
- 지구 내·외 위치한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 화신로, 행신로, 도내로, 배다골길, 흥도로, 성신로 등 도로에서 소음, 빛 공해,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확정된 철도시설, 도로시설, 환승시설 등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남측에 수색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 헬기 및 항공기 등의 소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군부대의 훈련(사격 등) 및 병영생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에 군부대와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군진지 등의 군작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북동측에 세계문화유산인 고양 서오릉이 위치하고, 남측 보호수 3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외 기개발 사업지구인 고양삼송, 원흥, 화정, 향동, 행신2, 능곡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레미콘 공장 3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이전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레미콘 공장 인근으로 공사 여건에 따라 레미콘 차량 임시 우회도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레미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남측에 배수지, 가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동측 전기공급시설(변전소 1개소), 열공급설비(3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전기공급시설(변전소 1개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철도시설(환기구 3개소, GTX 변전소 1개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송수관로, 가압장, 맨홀펌프 등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지방하천 3개소(창릉천, 순창천, 성사천), 소하천 4개소(은못이천, 도내천, 동산천, 홍릉천)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영구저류시설(저류지)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해영향평가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군사시설, 특수학교, 물류·유통시설, 공장, 자동차정류장, 종교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북측과 남측에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고양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9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창릉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까지 하천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계획된 공원용지는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양창릉지구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아래의 행위제한 및 금지사항 내용을 적용받는 지역임

- ◇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 ◇ 기지보호구역 안에서의 무선통신 신설 설치 및 전파발사 행위
- ◇ 비행안전구역(제2구역~제6구역) 내에서의 제한높이 이상의 비행장애물(건축물, 구조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 또는 방치
-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 ◇ 연막, 증기발산 및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 진열 행위

■ 기타사항

▶ 인허가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6년 01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영향평가 등에 의해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수자원관리위원회심의,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홈페이지,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내용, 구성,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수경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사항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해당 측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입주 및 등기(면적정산)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지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 가속속차로 대지면적 정산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않음)
-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시공 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않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은 오차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산입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저축) 등에 해당되며, 추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지역지구 지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구역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인접단지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물(건본주택, 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기타 홍보자료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 철도, 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건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에어클린시스템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CG등에 표현되는 DA 및 그릴창의 크기, 위치 및 개소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되는 DA의 크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 공통사항

- 본 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초등학교 및 경관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기존 산림이 연접해 있으며, 단지 남측으로 근린공원, 동측으로 경관녹지 및 하천이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공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저감을 위해 단지 외부 서측으로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은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 서측의 테두리를 따라 보행자통로(폭 2M)를 설치할 예정이며, 통로와 연결되는 일부 출입구를 통해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며, 시야간섭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 서측의 보행자통로 면적은 대지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기부채납 도로가 아님), 준공 후 유지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동측의 경우 성사천과 이어지는 보행자 출입구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며, 시야간섭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동별 환기창 설치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탑라이트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패드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설비 예정 위치 1) 옥외안테나 : 해당사항없음, 2) 중계장치 : 지하1층 102, 103동 인근 웬룸(추후 위치와 설치개소는 변경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4,5호 라인 옥상, 103동 3,4,5호 라인 옥상 구조물에 조명형 Bi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모형을 통해 확인 바라며, 그 주변 동 및 세대는 빛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추후 위치와 설치개소는 변경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개폐기, 변압기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의거 단지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안테나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통기관,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및 해충 등의 생활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및 단지 내 태양광 패널의 설치 위치는 추후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로 일반 타 아파트 대비 단지 내 세대 등 조명 조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계실·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세대는 조망권, 환경권이 침해될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운영방식,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문주 및 차량 출입구 등의 외부시설물과 주동 옥상/옥탑 장식물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시공 시 디자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서측 경관녹지 인근에 정압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 일부 동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연결통로 및 출입구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옆, 상부 등 인근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 세대의 단열재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내부에는 각종 웬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북측 주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 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주는 인허가 협의 및 구조, 시공여건, 기능에 따라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1층은 2.7m 이상, 지하2층 2.3m 이상 , 주차공간 높이는 2.1m 이상,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8m 이상입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일반 (확장형, 경형 포함)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597대 (1.2대)	계	510대	24대	60대*	2대	1대	-
	지상1층	-	-	-	2대	1대	-
	지하1층	201대	24대	60대*	-	-	-
	지하2층	309대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60개 중 6개는 급속충전기, 6개는 완속충전기, 48개는 완속 콘센트형으로 계획되어 있음
- 상기 주차계획은 향후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트렌치 위치 및 규격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웬룸 상부에 환기탑(DA)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각 동별로 접근성이 상이하오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와 개소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에 따라 각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및 국토부, 고양시장의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적정 설비 및 방재 계획이 되어 있고, 전기차 인근에 설치되는 방재시설물은 입주민의 개인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홀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의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지하1층)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공 시 유효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설치 예정이며, 동별 이용거리 및 이용개수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인택배시스템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 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수 계획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산정방식에 따라 층수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이며, 지하 1층의 경우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전기차 주차구역에 단위별(3~6대) 격리 방화벽 구획, CCTV 및 연기감지기 설치, 질식소화포 설치, 연결충수관 방수구 및 방수구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2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그룹스터디룸(입주민회의실),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등]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101, 103동)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근로자휴게실 - 101동, 경로당 - 103동) 및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남동측에는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그룹스터디룸(입주민회의실),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물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해당 시설 사용자와 시야간섭 및 생활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옥상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및 실외기실 루버의 경우 추후 크기 및 설치 위치가 변경,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 D.A,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인근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투시,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 2층 주동 하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고, 공간 및 수납함은 각 세대당 제공되지 않으므로 추후 관리사무소와 사용을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절창고는 동별로 수납함의 개소가 차이가 있으니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된 계절창고는 내부 및 외부조건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출입구 전면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트랜치가 설치되나, 설치위치 및 규격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설계변경에 따라 출입구 위치, 단차,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사인물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단지 북측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세대는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가용 전기 인입 개폐기 또는 변압기, 맨홀 등이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일부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냄새,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101동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저감을 위해 단지 외부 서측으로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은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통신설비 메인간선을 아파트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북측 도로변과 내 · 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실외기실 및 옥상조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반

-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흠막이 공법은 시공성 안정성,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등

- 단지 내 지하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조경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각 동 일부 전·후면 조경공간 내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설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면 조적 및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 또는 도장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101동

- 주동 3호 라인 지상 1층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동 1층에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근로자휴게실)이 계획되었으며, 해당 시설 및 실외기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빛 공해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3,4호 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4호 라인 북측, 3,4,5호 라인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었으며, 해당 시설 및 근생용 쓰레기분리수거함, 실외기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빛 공해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동측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회전교차로, 경비실 및 문주, 키즈스테이션, 드롭오프존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서측 약 24m 도로, 북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2호 조합에는 1개소, 3호 조합에는 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1층 3호 라인 필로티 하부, 3,4호 측벽 사이, 5호 라인 남측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4, 5호 라인 인근에는 단지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슬로프가 계획되어, 단지 및 주동 북서측의 보행자 출입구에서 통행하는 사람들로 인한 소음 및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에 탑라이트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4,5호 라인 옥상 구조물에 조명형 BI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모형을 통해 확인 바라며, 그 주변 동 및 세대는 빛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102동

- 주동 1호 라인 지상 1층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동 1호 및 3,4호 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1호 라인 측벽 부근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측 위치한 어린이집 및 영유아놀이터, 수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서측에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는 보행자로 인한 소음 및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 공원녹지가 인접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서측 약 24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2호 조합에는 1개소, 3호 조합에는 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1층 1호 라인 필로티 하부 및 측벽, 3,4호 측벽 사이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지하1층 1호라인 부근 헬룸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에 탑라이트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남측으로 GTX-A노선(예정)이 근접하여 철도관련 공사 및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GTX-A 예정노선 위치 및 공사 계획 등 관련 사항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3동

- 주동 남동측 지하1층~지상1층에 부대복리시설(지하1층 :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 / 지상1층 :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놀이터 등)이 인접하고, 4호라인 지상1층에 부대복리시설(경로당)이 계획되었으며, 해당 시설 및 실외기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빛 공해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동측 부대복리시설 옥상에는 조경 및 휴게공간이 일부 설치될 예정이며, 사용자들로 인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 라인 남측에는 선크이 계획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통행자와의 시야간섭,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1,3,5호 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서측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영유아놀이터, 수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호 라인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측 녹지 및 하천(성사천)이 인접하고, 이와 연결된 보행자출입구(동측 1개소, 남동측 1개소)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소음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 공원녹지가 인접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2호 조합에는 1개소, 3호 조합에는 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1층 1,2호 코어 계단실 부근, 2,3호 측벽 북측 인근, 1호 라인 동측, 5호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지하1층 5호라인 부근 헬룸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에 탑라이트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3,4,5호 라인 옥상 구조물에 조명형 BI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모형을 통해 확인 바라며, 그 주변 동 및 세대는 빛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으로 GTX-A노선(예정)이 근접하여 철도관련 공사 및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GTX-A 예정노선 위치 및 공사 계획 등 관련 사항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4동

- 주동 2,5호 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1호 라인 북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동측 녹지 및 하천(성사천)이 인접하고, 이와 연결된 보행자출입구(동측 1개소)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소음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서측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회전교차로, 경비실 및 문주, 키즈스테이션, 드롭오프존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2호 조합에는 1개소, 3호 조합에는 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1층 1호 라인 북동과 동측, 2호라인 북측, 2,3호 라인 측벽 사이, 5호라인 측벽 북측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북측 지하2층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들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에 탑라이트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 공통사항

- 당 단지는 **Bespoke 특화사업 시범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입주예약자 가구 선택품목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가구가 (주)한샘 가구로 시공되어 상표가 부착됩니다.**
- Bespoke 특화사업 적용에 따라 일부 가구 선택 시 다른 가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 및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 및 입면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홍보자료,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및 일반가구 제외)
- 본공사 시 가구의 내부 상세 및 규격, 치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벽,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고는 1~3층 2.5m, 4층 이상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립세대의 천장고는 1층~3층 기준 2.5m임)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샴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결로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단열재의 경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외기실의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은 주동 및 단열계획에 따라 세대마다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피난구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철제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천장에는 상부세대의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세대 천장~최상층 바닥까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필로티 상부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제외), 동일 주택형(주택타입)이라도 유효치수가 상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빛 공해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 환기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및 주택형(주택타입)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전 주택형(주택타입)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세대에는 외부 유입 우수 배수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입상 노출 배관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장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욕실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석재류 및 타일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션감지 센서로 작동되는 센서 타입의 절수기 설치 예정으로 바닥면에 절수기 페달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내에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화재 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주방TV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방가구 오픈장에 가스배관, 안정기 등으로 인한 돌출로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84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및 수량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주택형(주택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동일한 주택형(주택타입)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전 주택형(주택타입)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천장 조명위치는 기본형과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안정기(SMPS)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하부장일체형 세면대장 하부에 바닥욕가 F.D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주택타입)에 따라 설치되는 욕실 세면대가 상이합니다.(59A, B는 고급형 세면대, 74A, 84A는 하부장 일체형 세면대가 시공됨)
- 타일, 석재류 등의 마감재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에 따라 자재 특성상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형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출통,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주방발코니(발코니2)의 천장재 및 천장고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발코니2)의 경우,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간접조명의 설치공간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청소 시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의 거울에는 세정제(화약약품 포함)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약품 사용 시 거울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A/S는 불가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창호 크기 및 개수는 주동 주택형(주택타입)/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본 시공 시 시공되는 마감재는 제조시기, 생산번호 등에 따라 동일 마감재여도 색상 및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차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 같은 주택형(주택타입)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은 외측 유색(다크그레이), 내측 백색이 시공될 예정입니다.(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경우 수동개폐 장치가 설치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창호유리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계약 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며, 거실,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주방, 발코니2 :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 안방 내창(분합창) : 22mm 복층유리 이중창 / 안방 발코니 외창 : 22mm일면로이 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샷시는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안방 제외),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료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

- 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가 확장공사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의 경우 단위세대 조합 및 형태에 따라 실사용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 시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충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주택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 네트워크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이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 안방발코니 옆 실외기실 천장에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노출 설치됩니다.
-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생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 (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 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미적용	해당없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 2. 인증대상 3. 인증기준 4. 인증등급 5. 인증결과 6. 인증일자 7. 인증기관 8. 인증일자 9. 인증일자 10. 인증일자 11. 인증일자 12. 인증일자 13. 인증일자 14. 인증일자 15. 인증일자 16. 인증일자 17. 인증일자 18. 인증일자 19. 인증일자 20. 인증일자 21. 인증일자 22. 인증일자 23. 인증일자 24. 인증일자 25. 인증일자 26. 인증일자 27. 인증일자 28. 인증일자 29. 인증일자 30. 인증일자 31. 인증일자 32. 인증일자 33. 인증일자 34. 인증일자 35. 인증일자 36. 인증일자 37. 인증일자 38. 인증일자 39. 인증일자 40. 인증일자 41. 인증일자 42. 인증일자 43. 인증일자 44. 인증일자 45. 인증일자 46. 인증일자 47. 인증일자 48. 인증일자 49. 인증일자 50. 인증일자 51. 인증일자 52. 인증일자 53. 인증일자 54. 인증일자 55. 인증일자 56. 인증일자 57. 인증일자 58. 인증일자 59. 인증일자 60. 인증일자 61. 인증일자 62. 인증일자 63. 인증일자 64. 인증일자 65. 인증일자 66. 인증일자 67. 인증일자 68. 인증일자 69. 인증일자 70. 인증일자 71. 인증일자 72. 인증일자 73. 인증일자 74. 인증일자 75. 인증일자 76. 인증일자 77. 인증일자 78. 인증일자 79. 인증일자 80. 인증일자 81. 인증일자 82. 인증일자 83. 인증일자 84. 인증일자 85. 인증일자 86. 인증일자 87. 인증일자 88. 인증일자 89. 인증일자 90. 인증일자 91. 인증일자 92. 인증일자 93. 인증일자 94. 인증일자 95. 인증일자 96. 인증일자 97. 인증일자 98. 인증일자 99. 인증일자 100. 인증일자 101. 인증일자 102. 인증일자 103. 인증일자 104. 인증일자 105. 인증일자 106. 인증일자 107. 인증일자 108. 인증일자 109. 인증일자 110. 인증일자 111. 인증일자 112. 인증일자 113. 인증일자 114. 인증일자 115. 인증일자 116. 인증일자 117. 인증일자 118. 인증일자 119. 인증일자 120. 인증일자 121. 인증일자 122. 인증일자 123. 인증일자 124. 인증일자 125. 인증일자 126. 인증일자 127. 인증일자 128. 인증일자 129. 인증일자 130. 인증일자 131. 인증일자 132. 인증일자 133. 인증일자 134. 인증일자 135. 인증일자 136. 인증일자 137. 인증일자 138. 인증일자 139. 인증일자 140. 인증일자 141. 인증일자 142. 인증일자 143. 인증일자 144. 인증일자 145. 인증일자 146. 인증일자 147. 인증일자 148. 인증일자 149. 인증일자 150. 인증일자 151. 인증일자 152. 인증일자 153. 인증일자 154. 인증일자 155. 인증일자 156. 인증일자 157. 인증일자 158. 인증일자 159. 인증일자 160. 인증일자 161. 인증일자 162. 인증일자 163. 인증일자 164. 인증일자 165. 인증일자 166. 인증일자 167. 인증일자 168. 인증일자 169. 인증일자 170. 인증일자 171. 인증일자 172. 인증일자 173. 인증일자 174. 인증일자 175. 인증일자 176. 인증일자 177. 인증일자 178. 인증일자 179. 인증일자 180. 인증일자 181. 인증일자 182. 인증일자 183. 인증일자 184. 인증일자 185. 인증일자 186. 인증일자 187. 인증일자 188. 인증일자 189. 인증일자 190. 인증일자 191. 인증일자 192. 인증일자 193. 인증일자 194. 인증일자 195. 인증일자 196. 인증일자 197. 인증일자 198. 인증일자 199. 인증일자 200. 인증일자 201. 인증일자 202. 인증일자 203. 인증일자 204. 인증일자 205. 인증일자 206. 인증일자 207. 인증일자 208. 인증일자 209. 인증일자 210. 인증일자 211. 인증일자 212. 인증일자 213. 인증일자 214. 인증일자 215. 인증일자 216. 인증일자 217. 인증일자 218. 인증일자 219. 인증일자 220. 인증일자 221. 인증일자 222. 인증일자 223. 인증일자 224. 인증일자 225. 인증일자 226. 인증일자 227. 인증일자 228. 인증일자 229. 인증일자 230. 인증일자 231. 인증일자 232. 인증일자 233. 인증일자 234. 인증일자 235. 인증일자 236. 인증일자 237. 인증일자 238. 인증일자 239. 인증일자 240. 인증일자 241. 인증일자 242. 인증일자 243. 인증일자 244. 인증일자 245. 인증일자 246. 인증일자 247. 인증일자 248. 인증일자 249. 인증일자 250. 인증일자 251. 인증일자 252. 인증일자 253. 인증일자 254. 인증일자 255. 인증일자 256. 인증일자 257. 인증일자 258. 인증일자 259. 인증일자 260. 인증일자 261. 인증일자 262. 인증일자 263. 인증일자 264. 인증일자 265. 인증일자 266. 인증일자 267. 인증일자 268. 인증일자 269. 인증일자 270. 인증일자 271. 인증일자 272. 인증일자 273. 인증일자 274. 인증일자 275. 인증일자 276. 인증일자 277. 인증일자 278. 인증일자 279. 인증일자 280. 인증일자 281. 인증일자 282. 인증일자 283. 인증일자 284. 인증일자 285. 인증일자 286. 인증일자 287. 인증일자 288. 인증일자 289. 인증일자 290. 인증일자 291. 인증일자 292. 인증일자 293. 인증일자 294. 인증일자 295. 인증일자 296. 인증일자 297. 인증일자 298. 인증일자 299. 인증일자 300. 인증일자 301. 인증일자 302. 인증일자 303. 인증일자 304. 인증일자 305. 인증일자 306. 인증일자 307. 인증일자 308. 인증일자 309. 인증일자 310. 인증일자 311. 인증일자 312. 인증일자 313. 인증일자 314. 인증일자 315. 인증일자 316. 인증일자 317. 인증일자 318. 인증일자 319. 인증일자 320. 인증일자 321. 인증일자 322. 인증일자 323. 인증일자 324. 인증일자 325. 인증일자 326. 인증일자 327. 인증일자 328. 인증일자 329. 인증일자 330. 인증일자 331. 인증일자 332. 인증일자 333. 인증일자 334. 인증일자 335. 인증일자 336. 인증일자 337. 인증일자 338. 인증일자 339. 인증일자 340. 인증일자 341. 인증일자 342. 인증일자 343. 인증일자 344. 인증일자 345. 인증일자 346. 인증일자 347. 인증일자 348. 인증일자 349. 인증일자 350. 인증일자 351. 인증일자 352. 인증일자 353. 인증일자 354. 인증일자 355. 인증일자 356. 인증일자 357. 인증일자 358. 인증일자 359. 인증일자 360. 인증일자 361. 인증일자 362. 인증일자 363. 인증일자 364. 인증일자 365. 인증일자 366. 인증일자 367. 인증일자 368. 인증일자 369. 인증일자 370. 인증일자 371. 인증일자 372. 인증일자 373. 인증일자 374. 인증일자 375. 인증일자 376. 인증일자 377. 인증일자 378. 인증일자 379. 인증일자 380. 인증일자 381. 인증일자 382. 인증일자 383. 인증일자 384. 인증일자 385. 인증일자 386. 인증일자 387. 인증일자 388. 인증일자 389. 인증일자 390. 인증일자 391. 인증일자 392. 인증일자 393. 인증일자 394. 인증일자 395. 인증일자 396. 인증일자 397. 인증일자 398. 인증일자 399. 인증일자 400. 인증일자 401. 인증일자 402. 인증일자 403. 인증일자 404. 인증일자 405. 인증일자 406. 인증일자 407. 인증일자 408. 인증일자 409. 인증일자 410. 인증일자 411. 인증일자 412. 인증일자 413. 인증일자 414. 인증일자 415. 인증일자 416. 인증일자 417. 인증일자 418. 인증일자 419. 인증일자 420. 인증일자 421. 인증일자 422. 인증일자 423. 인증일자 424. 인증일자 425. 인증일자 426. 인증일자 427. 인증일자 428. 인증일자 429. 인증일자 430. 인증일자 431. 인증일자 432. 인증일자 433. 인증일자 434. 인증일자 435. 인증일자 436. 인증일자 437. 인증일자 438. 인증일자 439. 인증일자 440. 인증일자 441. 인증일자 442. 인증일자 443. 인증일자 444. 인증일자 445. 인증일자 446. 인증일자 447. 인증일자 448. 인증일자 449. 인증일자 450. 인증일자 451. 인증일자 452. 인증일자 453. 인증일자 454. 인증일자 455. 인증일자 456. 인증일자 457. 인증일자 458. 인증일자 459. 인증일자 460. 인증일자 461. 인증일자 462. 인증일자 463. 인증일자 464. 인증일자 465. 인증일자 466. 인증일자 467. 인증일자 468. 인증일자 469. 인증일자 470. 인증일자 471. 인증일자 472. 인증일자 473. 인증일자 474. 인증일자 475. 인증일자 476. 인증일자 477. 인증일자 478. 인증일자 479. 인증일자 480. 인증일자 481. 인증일자 482. 인증일자 483. 인증일자 484. 인증일자 485. 인증일자 486. 인증일자 487. 인증일자 488. 인증일자 489. 인증일자 490. 인증일자 491. 인증일자 492. 인증일자 493. 인증일자 494. 인증일자 495. 인증일자 496. 인증일자 497. 인증일자 498. 인증일자 499. 인증일자 500. 인증일자 501. 인증일자 502. 인증일자 503. 인증일자 504. 인증일자 505. 인증일자 506. 인증일자 507. 인증일자 508. 인증일자 509. 인증일자 510. 인증일자 511. 인증일자 512. 인증일자 513. 인증일자 514. 인증일자 515. 인증일자 516. 인증일자 517. 인증일자 518. 인증일자 519. 인증일자 520. 인증일자 521. 인증일자 522. 인증일자 523. 인증일자 524. 인증일자 525. 인증일자 526. 인증일자 527. 인증일자 528. 인증일자 529. 인증일자 530. 인증일자 531. 인증일자 532. 인증일자 533. 인증일자 534. 인증일자 535. 인증일자 536. 인증일자 537. 인증일자 538. 인증일자 539. 인증일자 540. 인증일자 541. 인증일자 542. 인증일자 543. 인증일자 544. 인증일자 545. 인증일자 546. 인증일자 547. 인증일자 548. 인증일자 549. 인증일자 550. 인증일자 551. 인증일자 552. 인증일자 553. 인증일자 554. 인증일자 555. 인증일자 556. 인증일자 557. 인증일자 558. 인증일자 559. 인증일자 560. 인증일자 561. 인증일자 562. 인증일자 563. 인증일자 564. 인증일자 565. 인증일자 566. 인증일자 567. 인증일자 568. 인증일자 569. 인증일자 570. 인증일자 571. 인증일자 572. 인증일자 573. 인증일자 574. 인증일자 575. 인증일자 576. 인증일자 577. 인증일자 578. 인증일자 579. 인증일자 580. 인증일자 581. 인증일자 582. 인증일자 583. 인증일자 584. 인증일자 585. 인증일자 586. 인증일자 587. 인증일자 588. 인증일자 589. 인증일자 590. 인증일자 591. 인증일자 592. 인증일자 593. 인증일자 594. 인증일자 595. 인증일자 596. 인증일자 597. 인증일자 598. 인증일자 599. 인증일자 600. 인증일자 601. 인증일자 602. 인증일자 603. 인증일자 604. 인증일자 605. 인증일자 606. 인증일자 607. 인증일자 608. 인증일자 609. 인증일자 610. 인증일자 611. 인증일자 612. 인증일자 613. 인증일자 614. 인증일자 615. 인증일자 616. 인증일자 617. 인증일자 618. 인증일자 619. 인증일자 620. 인증일자 621. 인증일자 622. 인증일자 623. 인증일자 624. 인증일자 625. 인증일자 626. 인증일자 627. 인증일자 628. 인증일자 629. 인증일자 630. 인증일자 631. 인증일자 632. 인증일자 633. 인증일자 634. 인증일자 635. 인증일자 636. 인증일자 637. 인증일자 638. 인증일자 639. 인증일자 640. 인증일자 641. 인증일자 642. 인증일자 643. 인증일자 644. 인증일자 645. 인증일자 646. 인증일자 647. 인증일자 648. 인증일자 649. 인증일자 650. 인증일자 651. 인증일자 652. 인증일자 653. 인증일자 654. 인증일자 655. 인증일자 656. 인증일자 657. 인증일자 658. 인증일자 659. 인증일자 660. 인증일자 661. 인증일자 662. 인증일자 663. 인증일자 664. 인증일자 665. 인증일자 666. 인증일자 667. 인증일자 668. 인증일자 669. 인증일자 670. 인증일자 671. 인증일자 672. 인증일자 673. 인증일자 674. 인증일자 675. 인증일자 676. 인증일자 677. 인증일자 678. 인증일자 679. 인증일자 680. 인증일자 681. 인증일자 682. 인증일자 683. 인증일자 684. 인증일자 685. 인증일자 686. 인증일자 687. 인증일자 688. 인증일자 689. 인증일자 690. 인증일자 691. 인증일자 692. 인증일자 693. 인증일자 694. 인증일자 695. 인증일자 696. 인증일자 697. 인증일자 698. 인증일자 699. 인증일자 700. 인증일자 701. 인증일자 702. 인증일자 703. 인증일자 704. 인증일자 705. 인증일자 706. 인증일자 707. 인증일자 708. 인증일자 709. 인증일자 710. 인증일자 711. 인증일자 712. 인증일자 713. 인증일자 714. 인증일자 715. 인증일자 716. 인증일자 717. 인증일자 718. 인증일자 719. 인증일자 720. 인증일자 721. 인증일자 722. 인증일자 723. 인증일자 724. 인증일자 725. 인증일자 726. 인증일자 727. 인증일자 728. 인증일자 729. 인증일자 730. 인증일자 731. 인증일자 732. 인증일자 733. 인증일자 734. 인증일자 735. 인증일자 736. 인증일자 737. 인증일자 738. 인증일자 739. 인증일자 740. 인증일자 741. 인증일자 742. 인증일자 743. 인증일자 744. 인증일자 745. 인증일자 746. 인증일자 747. 인증일자 748. 인증일자 749. 인증일자 750. 인증일자 751. 인증일자 752. 인증일자 753. 인증일자 754. 인증일자 755. 인증일자 756. 인증일자 757. 인증일자 758. 인증일자 759. 인증일자 760. 인증일자 761. 인증일자 762. 인증일자 763. 인증일자 764. 인증일자 765. 인증일자 766. 인증일자 767. 인증일자 768. 인증일자 769. 인증일자 770. 인증일자 771. 인증일자 772. 인증일자 773. 인증일자 774. 인증일자 775. 인증일자 776. 인증일자 777. 인증일자 778. 인증일자 779. 인증일자 780. 인증일자 781. 인증일자 782. 인증일자 783. 인증일자 784. 인증일자 785. 인증일자 786. 인증일자 787. 인증일자 788. 인증일자 789. 인증일자 790. 인증일자 791. 인증일자 792. 인증일자 793. 인증일자 794. 인증일자 795. 인증일자 796. 인증일자 797. 인증일자 798. 인증일자 799. 인증일자 800. 인증일자 801. 인증일자 802. 인증일자 803. 인증일자 804. 인증일자 805. 인증일자 806. 인증일자 807. 인증일자 808. 인증일자 809. 인증일자 810. 인증일자 811. 인증일자 812. 인증일자 813. 인증일자 814. 인증일자 815. 인증일자 816. 인증일자 817. 인증일자 818. 인증일자 819. 인증일자 820. 인증일자 821. 인증일자 822. 인증일자 823. 인증일자 824. 인증일자 825. 인증일자 826. 인증일자 827. 인증일자 828. 인증일자 829. 인증일자 830. 인증일자 831. 인증일자 832. 인증일자 833. 인증일자 834. 인증일자 835. 인증일자 836. 인증일자 837. 인증일자 838. 인증일자 839. 인증일자 840. 인증일자 841. 인증일자 842. 인증일자 843. 인증일자 844. 인증일자 845. 인증일자 846. 인증일자 847. 인증일자 848. 인증일자 849. 인증일자 850. 인증일자 851. 인증일자 852. 인증일자 853. 인증일자 854. 인증일자 855. 인증일자 856. 인증일자 857. 인증일자 858. 인증일자 859. 인증일자 860. 인증일자 861. 인증일자 862. 인증일자 863. 인증일자 864. 인증일자 865. 인증일자 866. 인증일자 867. 인증일자 868. 인증일자 869. 인증일자 870. 인증일자 871. 인증일자 872. 인증일자 873. 인증일자 874. 인증일자 875. 인증일자 876. 인증일자 877. 인증일자 878. 인증일자 879. 인증일자 880. 인증일자 881. 인증일자 882. 인증일자 883. 인증일자 884. 인증일자 885. 인증일자 886. 인증일자 887. 인증일자 888. 인증일자 889. 인증일자 890. 인증일자 891. 인증일자 892. 인증일자 893. 인증일자 894. 인증일자 895. 인증일자 896. 인증일자 897. 인증일자 898. 인증일자 899. 인증일자 900. 인증일자 901. 인증일자 902. 인증일자 903. 인증일자 904. 인증일자 905. 인증일자 906. 인증일자 907. 인증일자 908. 인증일자 909. 인증일자 910. 인증일자 911. 인증일자 912. 인증일자 913. 인증일자 914. 인증일자 915. 인증일자 916. 인증일자 917. 인증일자 918. 인증일자 919. 인증일자 920. 인증일자 921. 인증일자 922. 인증일자 923. 인증일자 924. 인증일자 925. 인증일자 926. 인증일자 927. 인증일자 928. 인증일자 929. 인증일자 930. 인증일자 931. 인증일자 932. 인증일자 933. 인증일자 934. 인증일자 935. 인증일자 936. 인증일자 937. 인증일자 938. 인증일자 939. 인증일자 940. 인증일자 941. 인증일자 942. 인증일자 943. 인증일자 944. 인증일자 945. 인증일자 946. 인증일자 947. 인증일자 948. 인증일자 949. 인증일자 950. 인증일자 951. 인증일자 952. 인증일자 953. 인증일자 954. 인증일자 955. 인증일자 956. 인증일자 957. 인증일자 958. 인증일자 959. 인증일자 960. 인증일자 961. 인증일자 962. 인증일자 963. 인증일자 964. 인증일자 965. 인증일자 966. 인증일자 967. 인증일자 968. 인증일자 969. 인증일자 970. 인증일자 971. 인증일자 972. 인증일자 973. 인증일자 974. 인증일자 975. 인증일자 976. 인증일자 977. 인증일자 978. 인증일자 979. 인증일자 980. 인증일자 981. 인증일자 982. 인증일자 983. 인증일자 984. 인증일자 985. 인증일자 986. 인증일자 987. 인증일자 988. 인증일자 989. 인증일자 990. 인증일자 991. 인증일자 992. 인증일자 993. 인증일자 994. 인증일자 995. 인증일자 996. 인증일자 997. 인증일자 998. 인증일자 999. 인증일자 1000. 인증일자 1001. 인증일자 1002. 인증일자 1003. 인증일자 1004. 인증일자 1005. 인증일자 1006. 인증일자 1007. 인증일자 1008. 인증일자 1009. 인증일자 1010. 인증일자 1011. 인증일자 1012. 인증일자 1013. 인증일자 1014. 인증일자 1015. 인증일자 1016. 인증일자 1017. 인증일자 1018. 인증일자 1019. 인증일자 1020. 인증일자 1021. 인증일자 1022. 인증일자 1023. 인증일자 1024. 인증일자 1025. 인증일자 1026. 인증일자 1027. 인증일자 1028. 인증일자 1029. 인증일자 1030. 인증일자 1031. 인증일자 1032. 인증일자 1033. 인증일자 1034. 인증일자 1035. 인증일자 1036. 인증일자 1037. 인증일자 1038. 인증일자 1039. 인증일자 1040. 인증일자 1041. 인증일자 1042. 인증일자 1043. 인증일자 1044. 인증일자 1045. 인증일자 1046. 인증일자 1047. 인증일자 1048. 인증일자 1049. 인증일자 1050. 인증일자 1051. 인증일자 1052. 인증일자 1053. 인증일자 1054. 인증일자 1055. 인증일자 1056. 인증일자 1057. 인증일자 1058. 인증일자 1059. 인증일자 1060. 인증일자 1061. 인증일자 1062. 인증일자 1063. 인증일자 1064. 인증일자 1065. 인증일자 1066. 인증일자 1067. 인증일자 1068. 인증일자 1069. 인증일자 1070. 인증일자 1071. 인증일자 1072. 인증일자 1073. 인증일자 1074. 인증일자 1075. 인증일자 1076. 인증일자 1077. 인증일자 1078. 인증일자 1079. 인증일자 1080. 인증일자 1081. 인증일자 1082. 인증일자 1083. 인증일자 1084. 인증일자 1085. 인증일자 1086. 인증일자 1087. 인증일자 1088. 인증일자 1089. 인증일자 1090. 인증일자 1091. 인증일자 1092. 인증일자 1093. 인증일자 1094. 인증일자 1095. 인증일자 1096. 인증일자 1097. 인증일자 1098. 인증일자 1099. 인증일자 1100. 인증일자 1101. 인증일자 1102. 인증일자 1103. 인증일자 1104. 인증일자 1105. 인증일자 1106. 인증일자 1107. 인증일자 1108. 인증일자 1109. 인증일자 1110. 인증일자 1111. 인증일자 1112. 인증일자 1113. 인증일자 1114. 인증일자 1115. 인증일자 1116. 인증일자 1117. 인증일자 1118. 인증일자 1119. 인증일자 1120. 인증일자 1121. 인증일자 1122. 인증일자 1123. 인증일자 1124. 인증일자 1125. 인증일자 1126. 인증일자 1127. 인증일자 1128. 인증일자 1129. 인증일자 1130. 인증일자 1131. 인증일자 1132. 인증일자 1133. 인증일자 1134. 인증일자 1135. 인증일자 1136. 인증일자 1137. 인증일자 1138. 인증일자 1139. 인증일자 1140. 인증일자 1141. 인증일자 1142. 인증일자 1143. 인증일자 1144. 인증일자 1145. 인증일자 1146. 인증일자 1147. 인증일자 1148. 인증일자 1149. 인증일자 1150. 인증일자 1151. 인증일자 1152. 인증일자 1153. 인증일자 1154. 인증일자 1155. 인증일자 1156. 인증일자 1157. 인증일자 1158. 인증일자 1159. 인증일자 1160. 인증일자 1161. 인증일자 1162. 인증일자 1163. 인증일자 1164. 인증일자 1165. 인증일자 1166. 인증일자 1167. 인증일자 1168. 인증일자 1169. 인증일자 1170. 인증일자 1171. 인증일자 1172. 인증일자 1173. 인증일자 1174. 인증일자 1175. 인증일자 1176. 인증일자 1177. 인증일자 1178. 인증일자 1179. 인증일자 1180. 인증일자 1181. 인증일자 1182. 인증일자 1183. 인증일자 1184. 인증일자 1185. 인증일자 1186. 인증일자 1187. 인증일자 1188. 인증일자 1189. 인증일자 1190. 인증일자 1191. 인증일자 1192. 인증일자 1193. 인증일자 1194. 인증일자 1195. 인증일자 1196. 인증일자 1197. 인증일자 1198. 인증일자 1199. 인증일자 1200. 인증일자 1201. 인증일자 1202. 인증일자 1203. 인증일자 1204. 인증일자 1205. 인증일자 1206. 인증일자 1207. 인증일자 1208. 인증일자 1209. 인증일자 1210. 인증일자 1211. 인증일자 1212. 인증일자 1213. 인증일자 1214. 인증일자 1215. 인증일자 1216. 인증일자 1217. 인증일자 1218. 인증일자 1219. 인증일자 1220. 인증일자 1221. 인증일자 1222. 인증일자 1223. 인증일자 1224. 인증일자 1225. 인증일자 1226. 인증일자 1227. 인증일자 1228. 인증일자 1229. 인증일자 1230. 인증일자 1231. 인증일자 1232. 인증일자 1233. 인증일자 1234. 인증일자 1235. 인증일자 1236. 인증일자 1237. 인증일자 1238. 인증일자 1239. 인증일자 1240. 인증일자 1241. 인증일자 1242. 인증일자 1243. 인증일자 1244. 인증일자 1245. 인증일자 1246. 인증일자 1247. 인증일자 1248. 인증일자 1249. 인증일자 1250. 인증일자 1251. 인증일자 1252. 인증일자 1253. 인증일자 1254. 인증일자 1255. 인증일자 1256. 인증일자 1257. 인증일자 1258. 인증일자 1259. 인증일자 1260. 인증일자 1261. 인증일자 1262. 인증일자 1263. 인증일자 1264. 인증일자 1265. 인증일자 1266. 인증일자 1267. 인증일자 1268. 인증일자 1269. 인증일자 1270. 인증일자 1271. 인증일자 1272. 인증일자 1273. 인증일자 1274. 인증일자 1275. 인증일자 1276. 인증일자 1277. 인증일자 1278. 인증일자 1279. 인증일자 1280. 인증일자 1281. 인증일자 1282. 인증일자 1283. 인증일자 1284. 인증일자 1285. 인증일자 1286. 인증일자 1287. 인증일자 1288. 인증일자 1289. 인증일자 1290. 인증일자 1291. 인증일자 1292. 인증일자 1293. 인증일자 1294. 인증일자 1295. 인증일자 1296. 인증일자 1297. 인증일자 1298. 인증일자 1299. 인증일자 1300. 인증일자 1301. 인증일자 1302. 인증일자 1303. 인증일자 1304. 인증일자 1305. 인증일자 1306. 인증일자 1307. 인증일자 1308. 인증일자 1309. 인증일자 1310. 인증일자 1311. 인증일자 1312. 인증일자 1313. 인증일자 1314. 인증일자 1315. 인증일자 1316. 인증일자 1317. 인증일자 1318. 인증일자 1319. 인증일자 1320. 인증일자 1321. 인증일자 1322. 인증일자 1323. 인증일자 1324. 인증일자 1325. 인증일자 1326. 인증일자 1327. 인증일자 1328. 인증일자 1329. 인증일자 1330. 인증일자 1331. 인증일자 1332. 인증일자 1333. 인증일자 1334. 인증일자 1335. 인증일자 1336. 인증일자 1337. 인증일자 1338. 인증일자 1339. 인증일자 1340. 인증일자 1341. 인증일자 1342. 인증일자 1343. 인증일자 1344. 인증일자 1345. 인증일자 1346. 인증일자 1347. 인증일자 1348. 인증일자 1349. 인증일자 1350. 인증일자 1351. 인증일자 1352. 인증일자 1353. 인증일자 1354. 인증일자 1355. 인증일자 1356. 인증일자 1357. 인증일자 1358. 인증일자 1359. 인증일자 1360. 인증일자 1361. 인증일자 1362. 인증일자 1363. 인증일자 1364. 인증일자 1365. 인증일자 1366. 인증일자 1367. 인증일자 1368. 인증일자 1369. 인증일자 1370. 인증일자 1371. 인증일자 1372. 인증일자 1373. 인증일자 1374. 인증일자 1375. 인증일자 1376. 인증일자 1377. 인증일자 1378. 인증일자 1379. 인증일자 1380. 인증일자 1381. 인증일자 1382. 인증일자 1383. 인증일자 1384. 인증일자 1385. 인증일자 1386. 인증일자 1387. 인증일자 1388. 인증일자 1389. 인증일자 1390. 인증일자 1391. 인증일자 1392. 인증일자 1393. 인증일자 1394. 인증일자 1395. 인증일자 1396. 인증일자 1397. 인증일자 1398. 인증일자 1399. 인증일자 1400. 인증일자 1401. 인증일자 1402. 인증일자 1403. 인증일자 1404. 인증일자 1405. 인증일자 1406. 인증일자 1407. 인증일자 1408. 인증일자 1409. 인증일자 1410. 인증일자 1411. 인증일자 1412. 인증일자 1413. 인증일자 1414. 인증일자 1415. 인증일자 1416. 인증일자 1417. 인증일자 1418. 인증일자 1419. 인증일자 1420. 인증일자 1421. 인증일자 1422. 인증일자 1423. 인증일자 1424. 인증일자 1425. 인증일자 1426. 인증일자 1427. 인증일자 1428. 인증일자 1429. 인증일자 1430. 인증일자 1431. 인증일자 1432. 인증일자 1433. 인증일자 1434. 인증일자 1435. 인증일자 1436. 인증일자 1437. 인증일자 1438. 인증일자 1439. 인증일자 1440. 인증일자 1441. 인증일자 1442. 인증일자 1443. 인증일자 1444. 인증일자 1445. 인증일자 1446. 인증일자 1447. 인증일자 1448. 인증일자 1449. 인증일자 1450. 인증일자 1451. 인증일자 1452. 인증일자 1453. 인증일자 1454. 인증일자 1455. 인증일자 1456. 인증일자 1457. 인증일자 1458. 인증일자 1459. 인증일자 1460. 인증일자 1461. 인증일자 1462. 인증일자 1463. 인증일자 1464. 인증일자 1465. 인증일자 1466. 인증일자 1467. 인증일자 1468. 인증일자 1469. 인증일자 1470. 인증일자 1471. 인증일자 1472. 인증일자 1473. 인증일자 1474. 인증일자 1475. 인증일자 1476. 인증일자 1477. 인증일자 1478. 인증일자 1479. 인증일자 1480. 인증일자 1481. 인증일자 1482. 인증일자 1483. 인증일자 1484. 인증일자 1485. 인증일자 1486. 인증일자 1487. 인증일자 1488. 인증일자 1489. 인증일자 1490. 인증일자 1491. 인증일자 1492. 인증일자 1493. 인증일자 1494. 인증일자 1495. 인증일자 1496. 인증일자 1497. 인증일자 1498. 인증일자 1499. 인증일자 1500. 인증일자 1501. 인증일자 1502. 인증일자 1503. 인증일자 1504. 인증일자 1505. 인증일자 1506. 인증일자 1507. 인증일자 1508. 인증일자 1509. 인증일자 1510. 인증일자 1511. 인증일자 1512. 인증일자 1513. 인증일자 1514. 인증일자 1515. 인증일자 1516. 인증일자 1517. 인증일자 1518. 인증일자 1519. 인증일자 1520. 인증일자 1521. 인증일자 1522. 인증일자 1523. 인증일자 1524. 인증일자 1525. 인증일자 1526. 인증일자 1527. 인증일자 1528. 인증일자 1529. 인증일자 1530. 인증일자 1531. 인증일자 1532. 인증일자 1533. 인증일자 1534. 인증일자 1535. 인증일자 1536. 인증일자 1537. 인증일자 1538. 인증일자 1539. 인증일자 1540. 인증일자 1541. 인증일자 1542. 인증일자 1543. 인증일자 1544. 인증일자 1545. 인증일자 1546. 인증일자 1547. 인증일자 1548. 인증일자 1549. 인증일자 1550. 인증일자 1551. 인증일자 1552. 인증일자 1553. 인증일자 1554. 인증일자 1555. 인증일자 1556. 인증일자 1557. 인증일자 1558. 인증일자 1559. 인증일자 1560. 인증일자 1561. 인증일자 1562. 인증일자 1563. 인증일자 1564. 인증일자 1565. 인증일자 1566. 인증일자 1567. 인증일자 1568. 인증일자 1569. 인증일자 1570. 인증일자 1571. 인증일자 1572. 인증일자 1573. 인증일자 1574. 인증일자 1575. 인증일자 1576. 인증일자 1577. 인증일자 1578. 인증일자 1579. 인증일자 1580. 인증일자 1581. 인증일자 1582. 인증일자 1583. 인증일자 1584. 인증일자 1585. 인증일자 1586. 인증일자 1587. 인증일자 1588. 인증일자 1589. 인증일자 1590. 인증일자 1591. 인증일자 1592. 인증일자 1593. 인증일자 1594. 인증일자 1595. 인증일자 1596. 인증일자 1597. 인증일자 1598. 인증일자 1599. 인증일자 1600. 인증일자 1601. 인증일자 1602. 인증일자 1603. 인증일자 1604. 인증일자 1605. 인증일자 1606. 인증일자 1607. 인증일자 1608. 인증일자 1609. 인증일자 1610. 인증일자 1611. 인증일자 1612. 인증일자 1613. 인증일자 1614. 인증일자 1615. 인증일자 1616. 인증일자 1617. 인증일자 1618. 인증일자 1619. 인증일자 1620. 인증일자 1621. 인증일자 1622. 인증일자 1623. 인증일자 1624. 인증일자 1625. 인증일자 1626. 인증일자 1627. 인증일자 1628. 인증일자 1629. 인증일자 1630. 인증일자 1631. 인증일자 1632. 인증일자 1633. 인증일자 1634. 인증일자 1635. 인증일자 1636. 인증일자 1637. 인증일자 1638. 인증일자 1639. 인증일자 1640. 인증일자 1641. 인증일자 1642. 인증일자 1643. 인증일자 1644. 인증일자 1645. 인증일자 1646. 인증일자 1647. 인증일자 1648. 인증일자 1649. 인증일자 1650. 인증일자 1651. 인증일자 1652. 인증일자 1653. 인증일자 1654. 인증일자 1655. 인증일자 1656. 인증일자 1657. 인증일자 1658. 인증일자 1659. 인증일자 1660. 인증일자 1661. 인증일자 1662. 인증일자 1663. 인증일자 1664. 인증일자 1665. 인증일자 1666. 인증일자 1667. 인증일자 1668. 인증일자 1669. 인증일자 1670. 인증일자 1671. 인증일자 1672. 인증일자 1673. 인증일자 1674. 인증일자 1675. 인증일자 1676. 인증일자 1677. 인증일자 1678. 인증일자 1679.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27,096,196	
			기간이자	7,323,468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118,885	
			계	134,538,549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4,724,686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474,164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750,760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750,760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135,727	
			부대시설공사	-	
			계	9,836,097	
		건축	공동가설공사	4,405,657	
			가시설물공사	1,243,005	
			지정 및 기초공사	1,937,511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34,477,038	
			용접공사	-	
			조적공사	980,417	
			미장공사	3,464,737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1,325,621	
			목공사	4,563,240	
			가구공사	1,253,901	
			금속공사	698,937	
			지붕 및 흙통공사	-	
			창호공사	2,648,127	
			유리공사	1,013,933	
			타일공사	2,158,221	
			돌공사	264,260	
			도장공사	1,260,253	
			도배공사	656,607	
			수장공사	1,167,302	
			주방용구공사	835,934	
			잡공사	6,513,935	
			계	70,868,636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2,484,777
				급탕설비공사	2,174,180
				오배수설비공사	2,320,011
				위생기구설비공사	841,059
				난방설비공사	477,567
				가스설비공사	457,547
				자동제어설비공사	118,430
				특수설비공사	67,047
	공조설비공사	-			
	계	8,940,618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8,129,048		
		정보통신공사	2,695,011		
		소방설비공사	4,834,226		
		승강기공사	1,418,301		
		계	17,076,586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8,828,168		
		이윤	12,403,389		
		계	21,231,557		
		간접비	설계비	1,606,093	
	감리비		1,112,136		
	일반분양시설 경비		1,540,615		
	분담금 및 부담금		194,525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96,138		
	계		4,849,507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3,565,930	
	합계			300,907,48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주)삼창감정평가법인	나. (주)가람감정평가법인
129,955,286천원	129,844,309천원	130,066,265천원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전기/통신/소방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호	
계약금액	6,826,691,310

※ 감리회사 및 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기간 이자	기타 비용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 건설 추가 비용	지하 주차장 층고 증가 추가 비용	설계비 추가 비용	감리비 추가 비용	기초지반 공사비		안전 관리비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사업 승인 부가 조건 가산비
							홈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	에어컨 냉매 배관	기계 환기 설비					말뚝 박기 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기타 비용	
금액	7,609,772	7,488,213	121,559	34,321,012	2,161,899	1,037,090	3,716,125	748,770	849,113	1,312,422	2,432,190	377,743	197,055	7,687,085	2,905,532	5,995,561	197,083	182,621	405,520	4,115,203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구분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주)태영건설	이에스아이(주)
사업자등록번호	420-82-00573	409-81-31276	314-81-07954	105-81-74543	135-81-03388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우미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주)태영건설, 이에스아이(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며, 분양주체는 우미건설(주)입니다.

■ 시공사 현황

구분	시공사			
상호	우미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주)태영건설	이에스아이(주)
사업자등록번호	409-81-31276	314-81-07954	105-81-74543	135-81-03388

9. 건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건본주택	
 건본주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 위치안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 ※ 건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5.14. ~ 2026.05.15. 10:00~17:00 (일반 본청약 관람자) 2026.05.16. ~ 2026.05.22. 10:00~17:00 ※ 그 외 자격검증 서류제출, 정당계약체결 등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 일자에 방문 가능합니다. ■ 분양문의 : 031-632-5488 (10:00~18:00) ■ 공식홈페이지 : https://gc.lynn.co.kr/